



보 건 복 지 부



수신 수신자 참조
(경유)

제목 비급여 금액고지 및 사전설명 관련 안내

1. 일선 보건의료 현장에서 고생이 많으십니다.

2. 최근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및 사전설명 등과 관련하여 국민들로부터 의료기관의 불신, 불만 민원이 계속적으로 제기되어 관련 법 안내 및 사전설명 등 다음과 같은 사항을 협조 요청하니 귀 협회 회원(의료기관)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비급여 진료비용 사전고지와 관련하여 「의료법」 제4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의2에 따르면 의료기관 개설자는 비급여 대상의 항목과 그 가격을 적은 책자 등을 접수창구 등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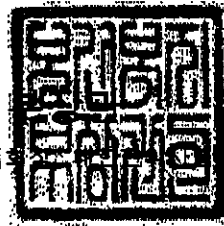
나. 또한, 의료법 시행규칙 제1조의2 별표1(환자의 권리와 의무)에 환자는 담당 의사, 간호사 등으로부터 질병상태, 치료방법, 의학적 연구 대상 여부, 부작용 등 예상 결과 및 진료비용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자세히 물어볼 수 있으며, 이에 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.

다. 이에, 일선 의료기관에서 비급여 진료비용의 고지 및 설명 등과 관련하여 의료현장에서의 어려움 등은 이해되나, ▲ 환자의 알권리 보호 ▲ 의료기관과 환자 간 신뢰 형성 ▲ 비싼 비급여 진료 항목에 대한 환자의 선택권 보호를 위해 의료법상 비급여 진료비용 가격 고지와 더불어 비급여 진료항목에 대한 사전 설명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. 끝.





보건복지



수신자 대한의사협회장, 대한병원협회장, 대한치과의사협회장, 대한간호협회장, 대한한방병원협회장

주무관 김정주 서기관 박미라 의료기관정책 2016. 4. 22. 과장 정영훈

협조자

시행 의료기관정책과-2612 (2016. 4. 22.) 접수

우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정부세종청사 10동 / http://www.mohw.go.kr

전화번호 044-202-2475 팩스번호 044-202-3977 / wjdwn80@korea.kr / 대국민 공개

위험할 땐 119, 힘겨울 땐 129